
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

[시행 2018.6.12.] [법률 제15663호, 2018.6.12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근로자·사용자 등 경제·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·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,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,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참여주체의 책무) 근로자·사용자 등 경제·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
-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1.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·경제·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
 2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·의식(意識)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
 3. 근로자·사용자 등 경제·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1. 상임위원 1명
 2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
 3.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
 4.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
 5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
-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.
-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.
 1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
 2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
-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.
 1.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
 2.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
-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.
-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·경제·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.
-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8.9.13.] 제4조제8항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
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1.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·조정
 2.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
 3.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
-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
1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
 2.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를 보좌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
 3.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
-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, 제7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위원장"은 "운영위원장"으로, "위원"은 "운영위원"으로, "위원회"는 "운영위원회"로 본다.
-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8.9.13.] 제8조제5항

제9조(의제별·업종별위원회)

- ① 위원회는 의제별·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. 다만, 의제별·업종별위원회 각각의

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의제별·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그 밖에 의제별·업종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8.9.13.] 제9조제3항

제10조(의제개발·조정위원회)

- ① 위원회는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.
- ②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.
- ③ 그 밖에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8.9.13.] 제10조제3항

제11조(특별위원회 등)

-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,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8.9.13.] 제11조제3항

제12조(사무처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-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,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.
-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전문위원)

-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.
- ② 전문위원의 수·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 1. 관계 당사자,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
 2.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
-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,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여론의 수집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·세미나 개최,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

제16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

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7조(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점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협의 결과의 보고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제19조(성실히 이행 의무) 근로자·사용자 등 경제·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0조(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)

-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·사용자 등 경제·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8.9.13.] 제20조제2항

부칙 〈제15663호, 2018.6.12〉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8항, 제8조제5항, 제9조제

3항, 제10조제3항,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본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

-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.
- ②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남은 위원의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